험/성적

시험의 종류와 시행방법

기말시험

매학기말 소정기간 중 시험시간표를 편성하여 시행

수시시험

학기중간 강의시간 중에 과목별 또는 담당교수별로 시행

임시시험

과제물, 학습세미나, 기타 학습활동을 평가

불응시신고 :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못보는 경우 불응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교학과에 신고하고, 불응시확인서를 교부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. 이후 추가시험으로 성적 부여주의(느낌표 아이콘)

결시자특례 : 해당 학기 3분의 2이상 수강하였으나, 학칙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말시험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과 증빙자료를 갖추어 각 교과목 교수들에게 확인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. 이후 수시시험이나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 부여.(최대 B+)주의(느낌표 아이콘)

성적

* 오른쪽 화살표(→)성적평가성적은 기말시험 및 수시시험 60%, 출석 20%, 기타성적 20%의 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실험.실습.실기 교과목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음.
* 오른쪽 화살표(→)학업성적의 평가기준

| 수강학생수 | A등급 | B등급 |

|-----------|------|------|

| 21명 이상 | 40% 이하 | 40% 이하 |

| 20명 이하 | 50% 이하 | 40% 이하 |

* 등급별 인원 산정시 소수는 절상하여 처리하며, A등급을 기준인원보다 적게 평가한 경우에는 잔여인원을 B등급에 포함할 수 있으며,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여 성적평가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.
* 오른쪽 화살표(→)절대평가 가능 교과목
  + 1원어(영어)강의 교과목
  + 2영어졸업인증자격 기준점수를 별도로 상향조정한 학과(부․전공)의 영어 및 영어회화 교과목
  + 3군사학 교과목
  + 4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된 3, 4학년 학생의 교직과목 및 자격증취득관련 교과목 중 법령이나 지침으로 한계성적 이상을 요구하는 교과목
  + 5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학생
  + 6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캡스톤디자인
  + 7실험‧실습실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공교과목
  + 8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전공교과목
  + 9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중 해당 전공교과목 수강자
  + 10예술체육실기 교양교과목
  + 11그 밖에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
  + 12국가재난,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* 오른쪽 화살표(→)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P(Pass) / F(Fail)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.
  + 1현장교육․실습 및 해외인턴십 교과목
  + 2세미나 및 포럼 등의 교과목
  + 3사회봉사 교과목
  + 4그밖에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
* 오른쪽 화살표(→)성적열람학기종료 후 소정기간(별도공고)에 Web으로 열람  
  ※ 강의설문평가 응답 학생에 한하여 열람 가능성적정정담당교수가 평가하여 제출한 성적은 변경 불가함. 다만, 착오로 인한 경우에 소정 기간 중에 정정신청 할 수 있음.

재수강/재이수

재수강

대상과목

취득성적 C+ 이하인 교과목 중 재수강을 원하는 교과목

신청기간

* 오른쪽 화살표(→)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B+이하의 범위에서 상위성적 하나만을 인정하고, 종전 성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 (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2항) 부칙 : 제15조제2항의 개정세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* 오른쪽 화살표(→)2015학년도 신입생이 2015학년도 2학기에 들었던 과목을 재수강하였을 경우 B+이하 성적 취득 (※ 2015학년도 1학기 과목은 재수강하였을 경우 A+까지 성적 취득 가능)
* 오른쪽 화살표(→)매학기 수강신청기간(변경기간 포함)

신청방법

* 오른쪽 화살표(→)인터넷 신청(포털/로그인/수강신청)
* 오른쪽 화살표(→)교과목명 및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(재수강클릭- 저장(완료)
* 오른쪽 화살표(→)교과목명 및 학수번호가 다른 경우 별도의 재수강신청서(학과비치)를 작성하여 동일과목임을 확인(개설학과장)받아, 학사팀에 제출
* 오른쪽 화살표(→)※ 위의 절차없이 재수강하면 상위성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, 중복이수로 되어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 불가

성적처리

* 오른쪽 화살표(→)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이전취득 성적과 비교하여 상위성적 인정
* 오른쪽 화살표(→)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전 취득 성적 인정
* 오른쪽 화살표(→)재수강 신청한 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에 계산되어 성적평가표가 배부되며, 성적증명서 발급시 하위성적을 삭제하고 평점을 다시 계산하여 발급됨

학업재이수

* 오른쪽 화살표(→)재학생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학년단위로 재이수 가능
* 오른쪽 화살표(→)복학생은 휴학하기 전의 학년 또는 학기의 성적을 취소하고 재이수 가능
* 오른쪽 화살표(→)재이수 해당학년 또는 학기의 성적은 취소처리하나, 학사경고 등의 처분사항은 유효함